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811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811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53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20. 5. 7.

판결 선고 2020. 6.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5369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0. 28. 접수 제1023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0. 28. 접수 제1023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각 2003. 10. 2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로 결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0. 28. 접수 제1023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0. 28. 접수 제1023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각 2003. 10. 2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F에 대한 물품대금 4천만 원의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과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0. 28. 접수 제102356호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F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1998. 10. 28.

접수 제102357호로 권리자 피고 B, F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설정해 주었다.

라. F는 2007. 6.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상속지분 3/7), 자녀인 피고 D, 피고 E(상속지분 각 2/7)가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1999. 10. 28.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1)

나. 판단

1) 피고 B 부분 가) 피고 B은 제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이라고 할 것인데,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각 설정되었다는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의 각 설정일자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피고 B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자 담보 목적 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각 등기의 설정일자로부터 5년이 지난 2003. 10. 28.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가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각 2003. 10. 2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 부분 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 D,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2003. 10. 2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20. 5. 15.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및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들의 위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참조).

나. 보충적으로 판단하건대, 피고들은 위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와 피고들이 채무변제 및 담보권실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2013. 12. 30.이라거나 피고 B의 업무담당자인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피고들의 기산점에 관한 주장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G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4)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재판장판사송승용

판사정덕수

판사하성원

별지

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말소등기의 원인으로 '2003. 10. 2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나,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에게 유리하게 상법을 적용한다.

3)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4) 원고는 피고 C, D, E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았고, 제1심판결도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 법원이 등기의무자의 재산상속인들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 상속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822 판결 참조).